

「교양교육원 운영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021. 2. 15. 개정 판 (시행 2021. 3. 1.) → 2022. 3. 7. 개정 판 (시행 2022. 3. 1.)

바뀜 3 · 신설 0 · 삭제 0 · 번호 변경 0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344/compare?from=1150&to=1265> · 내려받은 때 2026. 10. 21. 오후 10:07:15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6조(조직) ① 스미스학부대학에 <u>인문교양교육디자인센터</u>, <u>이음인문교양교육연구소</u>, <u>기초학문학부</u>, <u>창의융복합학문학부</u>, <u>교직과정을</u> 둘 수 있다 ② 인문교양교육디자인센터에는 교양교육과정운영 및 교과목 개설관리 등 필요한 업무를 위해 직원, 전문연구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③ 이음인문교양교육연구소는 교양교육과 관련된 교과연구 및 교육방법론을 연구하며 학술대회와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④ 기초학문학부는 기초학문관련 교과목운영(사고와 표현, 컴퓨팅 사고력, 외국어 교육)과 핵심교양의 기초(비교과 의사소통등의) 리터러시교육과 인문학적사고를 배양할 수 있는 인문학기반의 소양교육등 기초소양교육을 통해 핵심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기초교양교육과 기초학습역량강화 비교과프로그램을 주관한다. ⑤ 창의융복합학문학부는 교양교육과정 영역별 교양 중 6대 핵심역량 심화 및 체험교육에 해당하는 교육 등의 업무를 주관한다. ⑥ 이음인문교양교육연구소는 교양교육의 효율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교양교육과정 연구, 교과목 개발연구, 교육방법론 연구, 및 각종 학술대회를 운영한다. ⑦교직과정은 교직과 관련된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다. <전면개정 2019-09-23>	제6조(조직) ① 스미스학부대학에 <u>교학지원팀</u>, <u>기초교양부</u>, <u>핵심교양부</u>, <u>융합교양부</u>, <u>교양교육연구소</u>, <u>교직과정을</u> 둘 수 있다. <개정 2022-03-07> ② 교학지원팀에는 교양교육과정운영 및 교과목 개설관리 등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원과 전문연구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03-07> ③ 기초교양부에서는 대학생학에 필요한 기초학문관련 교과목운영(사고와 표현, 컴퓨팅 사고력, 외국어 교육)과 학생들의 기초능력을 향상시킬수 있는 비교과운영을 담당한다. <개정 2022-03-07> ④ 핵심교양부는 핵심교양의 기초(비교과 의사소통등의), 인성과 인문학적사고를 배양할 수 있는 인문학기반의 소양교육을 통해 핵심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기초교양교육과 기초학습역량강화 비교과프로그램을 주관한다. <개정 2022-03-07> ⑤ 융합교양부는 교양교육과정 영역별 교양 중 6대 핵심역량 심화 및 체험교육에 해당하는 교육 등의 업무를 주관한다. <개정 2022-03-07> ⑥ 교양교육연구소는 교양교육의 효율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교양교육과정 연구, 교과목 개발연구, 교육방법론 연구, 및 각종 학술대회를 운영한다. <개정 2022-03-07> ⑦교직과정은 교직과 관련된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다. <전면개정 2019-09-23>
제7조(위원회) ① 스미스학부대학의 <u>사업</u>을 위해 <u>학부대학운영위원회</u>를 둔다. <개정 2019-03-04> ② 위원회의 구성은 학부대학장, 부학장, 교무처장, <u>교목처장</u>, 단과대학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u>그 외의 약간 명을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u>, 스미스학부대학 교학팀장이 간사를 맡는다. <개정 2019-03-04> ③ 위원회는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u>학부대학운영위원회 외에</u>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 교양교육평가위원회, <u>교양교육연구위원회</u> 등을 두며,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제7조(위원회) ① 스미스학부대학의 <u>운영</u>을 위해 <u>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u>를 둔다. <개정 2019-03-04> ② 위원회의 구성은 학부대학장, 부학장, 교무부처장, <u>신학과장</u>, 단과대학장(2명), <u>교직과정(1명)</u>을 당연직으로 하며, 스미스학부대학 교학팀장이 간사를 맡는다. <개정 2019-03-04> ③ 위원회는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u>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 외에</u> 교양교육평가위원회를 두며,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03-04>

현 행	개 정 안
2019-03-04)	
제8조(교양교과목 개설) 교양교과목은 본 대학의 인재상과 핵심역량을 고려하고, 사회적 변화와 교과평가 등을 환류하여 다음 사항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7-08-14) 1. 기초교양(핵심역량의 기초) 교과목 글로컬 사고와 표현, 글로컬 영어, 컴퓨팅사고력은 3학점 3시수, 그린교육, 사회봉사, 인생설계와 진로는 1학점 1시수로 강의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2. 핵심교양영역(핵심역량의 기초) 교과목은 2학점 2시수의 필수과목과 3학점 3시수 선택과목으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기타 영역별(핵심역량 심화) 교양은 인문학영역, 사회과학영역, 자연과학영역, <u>문화예술영역</u>, 일반선택영역으로 구성하되, 일반선택영역은 2학점 2시수 혹은 1학점 2시수로 하고, 특별한 경우 3학점 3시수로 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영역은 3학점 3시수로 강의를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본 대학 인재상에 따른 핵심역량은 별도운영지침에 따른다.	제8조(교양교과목 개설) 교양교과목은 본 대학의 인재상과 핵심역량을 고려하고, 사회적 변화와 교과평가 등을 환류하여 다음 사항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7-08-14) 1. 기초교양(핵심역량의 기초) 교과목 글로컬 사고와 표현, 글로컬 영어, 컴퓨팅사고력은 3학점 3시수, 그린교육, 사회봉사, 인생설계와 진로는 1학점 1시수로 강의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2. 핵심교양영역(핵심역량의 기초) 교과목은 2학점 2시수의 필수과목과 3학점 3시수 선택과목으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기타 영역별(핵심역량 심화) 교양은 인문예술영역, 사회과학영역, 자연과학영역, <u>디지털터러시영역</u>, 일반선택영역으로 구성하되, 일반선택영역은 2학점 2시수 혹은 1학점 2시수로 하고, 특별한 경우 3학점 3시수로 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영역은 3학점 3시수로 강의를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본 대학 인재상에 따른 핵심역량은 별도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문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교양교육원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6조(조직) ① 스미스학부대학에 교학지원팀, 기초교양부, 핵심교양부, 융합교양부, 교양교육연구소, 교직과정을 둘 수 있다.
- ② 교학지원팀에는 교양교육과정운영 및 교과목 개설관리 등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원과 전문연구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
- ③ 기초교양부에서는 대학생활에 필요한 기초학문관련 교과목운영(사고와 표현, 컴퓨팅 사고력, 외국어 교육)과 학생들의 기초능력을 향상시킬수 있는 비교과운영을 담당한다.
- ④ 핵심교양부는 핵심교양의 기초(비교과 의사소통등의), 인성과 인문학적사고를 배양할 수 있는 인문학기반의 소양 교육을 통해 핵심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기초교양교육과 기초학습역량강화 비교과프로그램을 주관한다.
- ⑤ 융합교양부는 교양교육과정 영역별 교양 중 6대 핵심역량 심화 및 체험교육에 해당하는 교육 등의 업무를 주관한다.
- ⑥ 교양교육연구소는 교양교육의 효율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교양교육과정 연구, 교과목 개발연구, 교육방법론 연구, 및 각종 학술대회를 운영한다.
- ⑦ 교직과정은 교직과 관련된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7조(위원회) ① 스미스학부대학의 운영을 위해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의 구성은 학부대학장, 부학장, 교무부처장, 신학과장, 단과대학장(2명), 교직과정(1명)을 당연직으로 하며, 스미스학부대학 교학팀장이 간사를 맡는다.
- ③ 위원회는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㉕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 외에 교양교육평가위원회를 두며,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중 "인문학영역"을 "인문예술영역"으로 하고, "문화예술영역"을 "디지털리터러시영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